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제3차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학교상담법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바꾸는가

필요한 치료는 더 빠르게,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학교 안에

행사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8시 시작(전체 녹취 분량 약 131분)
진행 방식	Zoom 온라인 공개토론회
토론 주제	위기학생을 환자가 아닌 학생으로 남게 하는 법 — 학교상담법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바꾸는가
주최·주관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작성 근거	제1·2차 토론회 결과보고서, 제3차 전체 녹취록, 발제자 7인의 발제문·발표자료
작성일	2026년 7월 24일

공개토론회 기록 · 학교상담법 현장 실행 기준 정리

1. 작성 목적

이 보고서는 2026년 7월 23일 열린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제3차 공개 토론회의 전체 녹취록과 발제자별 발제문·발표자료를 종합하여, 토론회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학교상담법 제정 논의의 후속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제1차 토론회가 학생의 어려움을 ‘관리와 선별’의 대상으로 바꾸는 제도적 문제를 드러냈고, 제2차 토론회가 학교상담법 10대 원칙과 조문화 방향을 세웠다면, 제3차 토론회는 그 원칙이 실제 교실과 상담실에서 어떤 행동·기록·책임 구조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발제 순서를 따라가는 회의록을 넘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실행 기준과 아직 남은 법제·운영 쟁점을 함께 제시한다.

녹취록은 자동변환 과정에서 일부 인명과 전문용어에 오류가 있어 발제문과 발표자료를 대조하여 실제 표기로 정리하였다. 직접 인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내용은 발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약·재구성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는 순차 발제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의 ‘공통 방향’은 공식 의결사항이 아니라 여러 발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제안을 뜻한다.

보고서의 관점 제3차 토론회의 핵심 성과는 학교상담법의 철학을 다시 선언한 데 있지 않다. 학생의 말을 듣는 일, 긴급위험을 구분하는 일, 교사가 함께 판단하는 일, 상담정보를 보호하는 일, 치료 뒤 학교생활을 회복하는 일을 ‘학교가 실제로 수행할 절차’로 바꾼 데 있

2. 제1·2차 토론회에서 제3차 토론회로

세 차례 토론회는 서로 다른 주제를 병렬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문제 발견에서 원칙 정립을 거쳐 현장 실행으로 나아간 연속 과정이었다.

구분	핵심 질문	주요 성과	다음 단계로 넘긴 과제
제1차	학생 보호인가, 위험군 관리인가	정서행동 선별·의료연계 중심 체계에서 학생의 말과 학교의 교육적 책임이 사라지는 문제를 공론화	학교상담의 독자적 원칙과 권리 구조를 제시할 필요
제2차	무엇을 법으로 보장할 것인가	학교상담법 10대 원칙, 학생의 상담권, 낙인 방지, 비밀보장, 역할 분담, 사후회복지원의 조문화 방향 정립	원칙이 실제 학교의 시간·인력·기록·결정 절차에서 작동하는지 검증할 필요
제3차	학교상담법은 현장에서 무엇을 바꾸는가	긴급대응, 공동 사례회의, 기록 3분류, 학생·보호자 참여, 의료협업, 복귀지원, 회복지표를 현장 절차로 구	법률안·시행령·표준서식·현장 매뉴얼로 번역하고 이해관계자 검증을 확대할 필요

제1차는 문제를 드러냈고, 제2차는 원칙을 세웠으며, 제3차는 그 원칙이 학교의 행동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3. 행사 개요

항목	내용
행사명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제3차 공개토론회
주제	위기학생을 환자가 아닌 학생으로 남게 하는 법 — 학교상담법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바꾸는가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8시 시작(전체 녹취 분량 약 131분)
방식	Zoom 온라인 공개토론회
주최·주관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검토 자료	학교상담법 10대 원칙과 입법제안 초안, 공통사례, 발제자별 발제문·PPT, 전체 녹취록
진행 성격	심리학·교실·전문상담·학부모·법률·의료·사회복지·상담 실천 관점의 연속 발제와 진행자의 종합 정리(별도 의결 절차 없음)

4. 진행 및 발제자

황상민 박사가 토론회의 취지와 학교상담법 10대 원칙을 제시한 뒤, 교실·전문상담·학부모·법률·의료·상담 실천의 순서로 발제가 이어졌다. 각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긴급한 위기는 즉시 보호한다’는 전제를 유지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진단명이나 위험군 분류로 조기에 닫히지 않도록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였다.

발제자	역할·관점	발제 핵심
황상민	심리학 박사 · 학교상담법 제안 총괄 및 진행	학교는 병원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와 10대 원칙
조승연	초등학교 교사	담임이 혼자 해석하고 책임지지 않게 하는 공동 사례회의
박미서	학교 전문상담교사	상담 절차·기록·정보공유와 상담 신뢰의 법적 기준
김수정	학부모 · 관세사	학생과 학부모를 통보 대상에서 회복의 주체로 바꾸는 절차
이수연	변호사	독립 제정법의 체계와 조문별 권리·책임·정보보호 구조
김미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WPI 1호 의사	긴급위기 구분, 기능 중심 의료협업, 치료 이후 복귀지원
김혜원	WPI 상담사 ·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	문제행동을 참여·표현·책임·관계 회복으로 바꾸는 교육적 상담

5. 제3차 토론회의 공통사례와 중심 질문

발제자들은 서로 다른 실제 경험과 재구성 사례를 사용했지만, 공통사례의 구조는 유사했다. 학생은 수업 참여가 어렵고, 분노나 이탈 행동을 보이며, 등교가 불안정하다. 검사 결과나 병원 소견이 이미 존재하고, 보호자와 교사의 불안도 크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려

고 노력하지만, 검사·진료·외부연계가 이루어진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대하거나 학생의 학교생활을 다시 설계할 책임을 놓치기 쉽다.

토론회는 이 상황에서 ‘무슨 병인가’와 ‘어디로 보낼 것인가’만을 묻지 않았다. 현재 생명·신체의 위험이 얼마나 긴급한지, 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행동 직전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가 조정할 수 있는 자리·수업·관계·등교 조건은 무엇인지, 누가 함께 판단하고 누가 실행을 책임질지를 물었다.

기존 흐름에서 생기는 공백	제3차 토론회가 제안한 전환
검사·진단명이 학생 이해의 결론이 됨	현재 안전과 실제 학교생활 장면을 먼저 확인
담임 또는 상담교사가 혼자 해석하고 책임짐	공동 사례회의에서 관찰·해석·실행을 분리하고 역할을 정
상담내용 전체 또는 모호한 ‘상담정보’가 공유됨	상담 원문·학교생활 지원·연계·복귀 기록을 목적별로 구분
학생과 보호자가 결정 뒤 통보를 받음	목적·대안·정보공유 범위를 설명하고 질문·선택·수정에 참여
의료연계가 학교 책임의 종결점이 됨	치료 전후의 기능 변화를 공유하고 학교 복귀·관계·학습 지원을 계속
회복을 증상·문제행동 감소로만 판단	참여·표현·책임·관계의 변화를 관찰 가능한 지표로 확인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이 말은 병원에 보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병원에 보낸 뒤에도 학교가 학생의 배움과 관계와 복귀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3차 토론회 기초 발제의 취지

6. 주요 발제 내용

6-1. 황상민 — 10대 원칙을 학교생활 회복 절차로

황상민 박사는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치료를 부정하거나 학교가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자살 계획, 반복적 자해, 학대 피해, 심각한 폭력 위험처럼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야 한다. 문제는 긴급위기와 수업 거부·분노·산만함·등교 곤란·관계 갈등 같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구분하지 않은 채, 검사·분류·연계가 학교 책임의 종결점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대 원칙을 ‘발견 → 학생의 말 → 생활 맥락 → 위기 구분 → 교육적 조정 → 공동 판단 → 필요한 연계 → 학교 복귀지원’의 흐름으로 제시했다. 학교상담법은 특정 직종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 담임·상담교원·학교장·교육청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학교 공동체에 다시 배분하는 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 정리 기초 발제는 제3차 토론회의 판단 기준을 세웠다. 긴급위기에는 더 빠르게 대응하되, 긴급하지 않은 어려움은 학생의 말과 학교생활 맥락을 거쳐야 하며, 외부연계 이후에도 학교의 교육적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6-2. 조승연 — 담임이 혼자 버티지 않게 하는 공동 사례회의

조승연 교사는 피구 중 한 학생이 친구의 뺨을 때린 사례를 통해, 사건 직후 담임이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었다. 피해학생의 안전 확인, 행동한 학생의 추가 위험 차단과 안정, 나머지 학급의 수업 유지, 사실 기록, 양쪽 보호자와의 소통이 한꺼번에 요구된다. 정보가 불완전하고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담임이 ‘학교폭력인가’, ‘정신과적 문제인가’, ‘학부모에게 무엇이든 설명할 것인가’를 혼자 판단하면 교육적 개입보다 책임 회피와 매뉴얼 의존이 앞서게 된다.

발제는 사건 직후 0~20분에는 안전·분리·수업 유지를, 20~40분에는 해석이 아닌 관찰과 사실 기록을, 가능하면 당일 또는 긴급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는 공동 사례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담임은 장면을 관찰하고 연결하며, 상담교원은 학생의 말과 심리적 맥락을 해석하고, 학교장은 인력·시간·민원 대응과 실행 여건을 책임지는 구조다.

사례 속 두 학생의 관계가 이후 회복된 경험은 ‘이해’가 가해행동의 책임을 지우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를 보호하면서, 행동한 학생이 자신의 해석과 감정, 행동의 영향, 필요한 사과와 다시 하기를 배울 때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교육적 회복은 양자택일이 아니게 된다.

핵심 제안 담임은 관찰자이자 연결자이며 단독 책임자가 아니다. 공동 사례회의는 학생을 공동으로 해석하는 회의인 동시에 누가 무엇을 언제 실행할지를 정하는 교원 보호 장치다.

6-3. 박미서 — 상담 신뢰와 학교 공동책임을 함께 지키는 기록 기준

박미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의 신뢰와 학생 안전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두지 않고, 목적에 맞는 정보구분과 최소공유 원칙으로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담을 시작할 때 학생에게 상담 목적, 비밀보장의 범위와 예외, 기록의 작성·사용 목적, 정보공유 범위, 질문하고 의견을 말할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이는 상담자의 친절이 아니라 학생의 설명권과 참여권이다.

기록은 최소한 세 범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첫째, 학생의 감정·관계 경험·가족 이야기·상담가설 등 내면정보가 담긴 상담 전문기록은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다. 둘째, 자리·휴식·수업·등교·관계 조정 등 학교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담은 학교생활 지원기록은 필요한 담당자와 공유한다. 셋째, 외부연계 사유, 설명한 내용, 동의 여부, 공유정보, 연계 이후 계획을 담은 연계·복귀 기록을 별도로 둔다.

공동 사례회의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학생의 내면 전체가 아니라 학생을 안전하게 돕기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다. 따라서 상담 원문과 상담자의 미확정 해석은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안전위험과 수업·등교의 어려움, 필요한 환경조정과 일관된 지원방법은 목적을 정해 최소한으로 공유해야 한다. 외부기관 연계 후에도 상담·학습·관계 복귀 계획은 학교가 이어가야 한다.

핵심 제안 상담 내용은 보호하되, 학생의 안전과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최소정보는 목적을 정해 공유한다. 기록의 분리는 비밀보장과 공동책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실행 조건이다.

6-4. 김수정 — 통보받는 학부모에서 회복의 협력자로

김수정 학부모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특수교육과 검사·의료 이용을 반복적으로 권유받았던 경험을 통해, 결론이 정해진 듯한 절차와 설명의 부재가 보호자의 불안을 키운다고 말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잘못 응답하면 자녀가 ‘관심학생’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제도가 지원을 위한 것임에도 솔직한 응답을 방해할 수 있다.

학교는 문제라고 판단한 구체적 장면, 학생이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감정, 실제로 확인된 사실, 학교가 먼저 또는 함께 할 교육적 대응, 보호자에게 요청하는 협력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검사·의료연계·특수교육 권유의 목적과 절차, 선택 가능한 대안,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와 예상되는 영향도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의 결정을 방해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회복의 협력자다. 충분한 이해, 질문할 기회, 자발적 선택, 실행 후 수정 가능성이 보장될 때 보호자도 학교의 교육적 지원에 책임 있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발제의 중심이었다.

핵심 제안 학교의 설명은 사후 통지가 아니라 공동 계획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학생·보호자가 실제로 선택하고 질문하고 수정할 수 있을 때 ‘동의’도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6-5. 이수연 — 학교상담법은 횡단적 권리·절차법이어야 한다

이수연 변호사는 학교상담법의 내용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법,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상의 여러 절차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느 한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검토했다. 학생의 자기의뢰·의견표명, 낙인 방지, 상담정보 보호, 연계 전 검토, 사후회복지원, 교원 간 역할과 책임, 권리구제를 함께 규율하는 독립된 보충적 절차법이 체계상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법률의 성격은 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지원체계·연수·전문적 지도감독을 결합하고, 상담정보의 고의적 누설이나 목적 외 이용에는 최소한의 제재를 두는 혼합형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상담 원문과 지원요약정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학교장 보고나 정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거나,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언제나 하나의 공동요건으로 묶는 방식은 상담권과 비밀보장을 약화할 수 있어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문화 방향으로는 자기의뢰와 결정 전 의견청취, 낙인 없는 상담, 상담기록 분리, 검사·진단에 의한 자동 분류·자동 연계 금지, 권리구제, 위기사안과 성장지원사안의 구분, 공동사례회의, 전문기관 연계 전 검토, 연계 후 회복지원, 담임·상담교원·학교장의 역할과 교원 보호가 제시되었다.

핵심 제안 학교상담법은 새로운 전달체계를 하나 더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학생 발견·지원 절차가 학생의 권리와 상담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학교 안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공통 절차법이다.

6-6. 김미정 — 긴급위기에는 즉시, 치료 뒤에는 기능 중심 복귀지원

김미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과거의 진단명이나 위기사건보다 먼저 ‘현재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수단·실행 의도, 반복되거나 심해진 자해, 타해 계획, 현실판단 손상, 학대, 의식 변화가 있다면 사례회의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보호·연계한다. 즉각적 위험은 없지만 자살 생각·자해나 수면·식사·일상 기능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전문평가를 받도록 하고 임시 안전계획을 세운다. 현재 긴급위험이 없고 어려움이 실패경험·관계갈등·학습공백과 연결된다면 학교 안 교육적 조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학교와 의료기관이 주고받을 정보는 진단명이나 상담 원문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최소정보여야 한다. 학교는 의뢰 목적과 긴급도, 확인된 안전위험, 등교·수업 참여 변화, 수면·식사·투약 전후의 관찰된 변화, 어려움이 심해지는 장면, 학생의 설명, 이미 시행한 조정과 반응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은 전일·부분등교 가능성, 과제·시험 조정, 학교가 관찰할 부작용·악화 신호, 재평가 시점 등 학교가 행동할 수 있는 정보로 회신할 필요가 있다.

치료와 약물 복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학생의 학교생활이 회복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학생이 돌아오는 첫날 누가 맞이할지, 어떤 수업부터 참여할지, 빠진 학업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정보 접근을 누가 관리할지를 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지역별 의료자문과 표준 의뢰·회신 양식을 지원해야 한다.

핵심 제안 병원은 의학적 평가와 치료를 담당하고, 학교는 매일의 참여와 복귀를 담당한다. 두 체계의 경계는 단절선이 아니라 긴급보호-평가-치료-학교생활 조정-복귀지원의 연결선이어야 한다.

6-7. 김혜원 — 마음읽기를 참여·표현·책임·관계의 변화로

김혜원 상담사는 문제행동을 진단의 증거로만 보지 않고,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표현과 선택을 배우는 교육적 상담과정을 제안했다. 과정은 ‘멈춘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 학생이 사실이라고 믿는 기준과 해석을 질문하기 → 거부와 분노를 대신할 표현을 만들기 → 실행 가능한 작은 선택을 정하기 → 행동이 끼친 영향과 피해를 회복하기 →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기 → 관계와 수업으로 돌아가기’의 일곱 단계로 정리되었다.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일은 피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실제 사건, 자신의 해석, 감정, 행동, 타인과 수업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말할 수 있어야 필요한 정리·사과·다시 하기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문장, 쉬었다 돌아오는 방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확인하는 방법을 실제 학교 장면에서 반복 연습해야 한다.

마음을 읽었다면 학교의 자리·수업·관계·등교 조건으로 번역해야 한다. 자극이 적고 도움을 요청하기 쉬운 자리, 짧게 나눈 과제, 휴식 신호와 복귀 시각, 신뢰교사와 도움요청 통로, 한 교시·한 활동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등교가 그 예다. 회복은 단순한 증상 감소가 아니라 참여, 표현, 책임, 관계의 변화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제안 상담의 성공은 학생을 조용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학생이 자기 경험을 말하고, 다른 행동을 선택하고, 피해를 책임지고, 다시 수업과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7. 발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통 방향

다음 내용은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친 합의문이 아니라, 7인의 발제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반복 확인된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공통 방향	현장 실행기준	의미
1. 긴급위기 우선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은 상담이나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호·신고·연계한다.	학교상담법이 응급조치를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차단한다.
2. 자동결론 금지	검사·진단·과거 위기 이력은 참고자료이며 현재 안전, 학생의 말, 학교생활 장면과 함께 판단한다.	위험군·환자라는 고정된 정체성과 자동연계를 막는다.
3. 학생의 설명권	상담·검사·연계·정보공유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학생이 질문·의견·선택에 참여한다.	학생을 결정의 대상에서 절차의 주체로 전환한다.
4. 공동 사례회의	관찰, 전문적 해석, 실행 설계, 민원·행정 책임을 한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학교가 함께 정한다.	교육적 개입과 교원 보호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5. 목적별 기록	상담 원문, 학교생활 지원정보, 연계·복귀정보를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목적에 따라 공유한다.	상담 신뢰와 학교 공동책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6. 보호자 협력	통지 전에 이해 가능한 설명과 질문·선택·수정의 기회를 보장한다.	보호자를 민원 주체가 아니라 회복 계획의 협력자로 세운다.
7. 기능 중심 의료협업	학교와 의료기관은 진단명보다 등교·수업·관계·안전 기능과 필요한 조정을 중심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치료와 학교생활 지원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8. 연계 후 책임 지속	진료·치료·분리·미등교 중에도 상담·학습·관계·복귀 지원의 담당자와 점검 시점을 유지한다.	외부연계를 학교 책임의 종결점으로 만드는 관행을 바꾼다.
9. 회복지표 전환	증상과 문제행동의 감소뿐 아니라 참여·표현·책임·관계의 변화를 관찰한다.	상담의 목표를 통제에서 성장과 재참여로 바꾼다.
10. 실행조건 보장	학교장과 교육청이 시간, 대체인력, 상담인력, 민원 대응, 자문, 표준서식과 법률지원을 책임진다.	좋은 원칙을 교원 개인의 헌신에 맡기지 않는다.

8. 제3차 토론회가 제안한 학교 현장 실행 흐름

제3차 토론회의 발제와 법제 검토에서 제안된 내용을 현장 흐름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다. 이는 법령이나 시민네트워크의 공식 의결로 확정된 표준이 아니라 후속 입법·현장 검증을 위한 실행 흐름안이다.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기계적 매뉴얼이 아니라, 긴급 위험을 놓치지 않으면서 학생의 말과 학교의 교육적 책임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 공통 절차를 제안한다.

단계	필수 행동	책임과 조건
1단계 즉시 안전	피해·위험학생의 상태 확인, 필요한 분리, 추가 위험 차단, 나머지 학생의 수업·돌봄 유지	학교장 또는 지정책임자가 인력·공간을 즉시 배정
2단계 관찰 기록	판단명·진단명 대신 언제·어디서·무슨 행동과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중심으로 기록	담임·현장교직원은 관찰자 역할에 집중
3단계 학생의 말	학생이 경험한 사건, 해석, 감정, 필요, 원하는 해결을 발달 수준에 맞게 확인	긴급조치가 먼저였던 경우에도 사후 의견청취 보장

단계	필수 행동	책임과 조건
4단계 위기 구분	즉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 신속 전문평가가 필요한 상황, 학교 안 조정이 가능한 상황을 공동 판단	악화 기준·재평가 시점·상향 전환 절차를 함께 정함
5단계 공동 사례회의	관찰·상담해석·피해보호·교육조정·보호자 소통·연계 필요·담당자·기한을 결정	조승연 발제와 법제 검토에서 지체 없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개최하는 방안 제안
6단계 실행 계획	자리·수업·휴식·관계·등교·학습·피해회복·보호자 협력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함	학생이 수행 가능한 작은 선택과 지원담당자를 명시
7단계 필요한 연계	의뢰 목적과 최소정보를 설명·공유하고, 학교가 이어갈 지원계획을 동시에 작성	긴급위기는 즉시 연계하며 일반사안은 학생 의견과 대안을 검토
8단계 복귀·재평가	참여·표현·책임·관계 지표와 안전·등교·수업 기능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	연계·치료·미등교 중에도 연결을 유지하고 종료기준을 공동 확인

중요한 구분 긴급위험이 있으면 1단계에서 바로 보호·신고·연계를 시행한다. 이후 단계는 긴급조치를 지연시키는 선행요건이 아니라, 긴급조치와 병행하거나 조치 후 학교가 계속 책임져야 할 절차다.

※ 24시간 기준은 제3차 토론회의 발제와 법제 검토에서 제안된 방안이며 확정된 법적 의무가 아니다. 입법 단계에서는 야간·휴일, 학교장 부재, 상담교원 미배치 학교의 대체 절차와 교육지원청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9. 학교상담법에 반영해야 할 조문화·운영 방향

제3차 토론회는 10대 원칙을 다음과 같은 법률상 권리·의무와 시행체제로 번역할 근거를 제공했다.

규율 영역	법률에 들 핵심	시행령·지침에서 구체화할 내용
학생의 권리	자기의뢰, 결정 전 의견청취, 상담절차·비밀보장·정보공유에 관한 설명, 질문·대안제시·참여	연령·발달·장애·언어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과 긴급조치 후 의견청취 포함
낙인·자동분류 방지	검사·진단·위험군 분류만으로 지원·분리·외부연계를 자동 결정하지 않음	현재 위험, 학생 진술, 학교생활 기능, 교육적 지원 결과를 함께 검토
상담정보 보호	기록을 상담 전문기록·학교생활 지원기록·연계·복귀 기록으로 목적별 구분	생명·신체 위험과 법정 신고정보는 별도 기록유형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설계. 상담 원문 시스템 연계 금지, 최소수집·접근통제·보존·파기기준 마련
공동 사례회의	신속한 소집, 학생·보호자의 안전별 참여, 위험 구분, 역할·기한·재평가 결정	야간·휴일, 학교장 부재, 상담교원 미배치 학교의 대체 절차와 교육지원청 지원
교원 역할	담임은 관찰·연결, 상담교원은 전문상담·자문, 학교장은 안전·인력·민원·실행의 최종 책임	담임·상담교원의 단독 진단·치료지시·민원·위기관리 책임 전가 금지
전문기관 연계	긴급위기는 즉시 연계, 그 밖의 경우 학교 안 지원 필요와 학생 의견을 검토	외부기관을 직접 이용하거나 학교상담을 거부해도 남은 학교생활 지원은 계속
사후회복지원	진료·투약·미등교·분리·등교조정 중 상담·학습·관계·복귀 담당자와 점검시점 지정	참여·표현·책임·관계와 안전·등교·수업 기능을 회복지표로 활용

구율 영역	법률에 둔 핵심	시행령·지침에서 구체화할 내용
의료협업	학교의 관찰정보와 의료기관의 기능 중심 권고를 표준 양식으로 교환	교육청 권역별 의료자문, 재평가 지원, 개인정보 최소화처리
권리구제·보호	정보유출·불이익·절차침해 시 독립된 조사·시정, 긴급 임시중지, 2차 불이익 금지	상담원문 고의 누설·목적 외 이용의 책임과 선의의 직무수행 교원 보호를 균형 설계
국가·교육청 지원	상담인력, 시간, 대체수업, 전문적 지도감독, 법률 지원, 표준서식과 실태조사	상담교원 미배치·소규모·농산어촌 학교의 접근성 격차 해소

10. 남은 쟁점과 추가 검증 질문

제3차 토론회는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지만, 발의안과 시행체제로 확정하기 전 다음 쟁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토론회의 한계라기보다 다음 공론화의 의제다.

- 긴급사례회의의 기산과 운영: ‘인지한 때’의 기준, 야간·휴일, 원격회의, 학교장 부재, 상담교원 미배치 학교, 24시간 미준수와 긴급조치 효력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위기 구분의 주체와 재평가: 즉시보호·신속평가·학교 안 조정의 판단 항목, 악화 상황 전환, 과거 고위험 분류에서 벗어나는 종료·재평가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 학생·보호자 동의와 충돌: 학생 단독 동의가 가능한 범위, 보호자와 의견이 다를 때의 기준, 보호자 통지가 학생의 안전·상담관계를 해칠 때의 예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상담기록의 세부 구조: 상담 전문기록·학교생활 지원기록·연계·복귀 기록이라는 ‘기록 목적’의 축과, 생명·신체 위험·법정 신고 시 최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유 예외’의 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각 기록의 필수 항목, 접근권자, 열람·정정, 보존·파기, 제3자 정보, 정보시스템 등록 금지 범위를 어디까지 법률에 직접 둘 것인가.
- 학교-의료 정보교환: 표준 의뢰서와 기능 중심 회신서, 재평가 요청, 약물 관련 관찰 전달, 민감정보 최소화처리와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어떻게 함께 마련할 것인가.
- 실행 인력과 시간: 피해학생·행동학생·나머지 학급을 동시에 보호할 대체인력, 사례회의 시간, 상담교원 배치와 사례수, 소규모 학교 지원을 어떤 재정·인력 기준으로 보장할 것인가.
- 책임·권리구제·벌칙: 학교장과 교육청의 조직적 책임, 원결정자와 조사자의 분리, 임시중지, 2차 불이익 금지, 고의적 정보침해의 구성요건과 타 법률 관계를 어떻게 정밀화할 것인가.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마음건강·정서행동 지원 입법이 구축하는 전달·정보 체계 안에서 학교상담법의 학생 권리·상담 원문 보호·학교 안 회복 기준을 어떻게 우선적 공통기준으로 작동시킬 것인가.

11. 제3차 토론회의 성과

- ‘의료 대 교육’이라는 오해를 넘어섰다: 긴급위기에는 즉시 전문기관과 연결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더 빠른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학교생활의 회복은 학교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경계를 분명히 했다.
- 10대 원칙을 시간 순서와 담당자에 연결했다: 사건 직후 안전·분리·수업 유지, 사실 관찰, 학생의 말, 위기 구분, 사례회의, 실행계획, 연계, 복귀·재평가의 흐름이 제시되었다.
- 상담 비밀과 공동책임의 접점을 만들었다: 상담 원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교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록 3분류와 목적별 최소공유라는 실행기준을 마련했다.
- 학생·보호자의 참여를 절차로 구체화했다: 설명, 질문, 선택, 협력, 수정 가능성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를 사후 통보 대상이 아니라 회복계획의 주체로 세웠다.
- 교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역할 분담으로 제시했다: 교사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석·행정·민원·실행의 책임을 적절한 주체에게 배분해 교사가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했다.
- 치료 이후의 공백을 법의 핵심 영역으로 드러냈다: 진료·투약·분리·미등교 이후 학생이 수업·관계·학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법률상 사후회복지원으로 다뤄야 한다는 근거를 강화했다.
- 회복의 측정 기준을 바꾸었다: 학생이 조용해졌는지보다 참여하고, 말하고, 책임지고, 다시 관계를 맺는지를 상담과 학교지원의 성과로 제안했다.

12. 시민네트워크 활동에서의 의미

이번 토론회는 시민네트워크의 논의를 비판과 선언의 단계에서 입법과 실행 설계의 단계로 옮겼다. ‘학교가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치료 거부나 전문가 불신으로 읽히지 않도록 긴급위기 대응과 의료의 역할을 명확히 했고, 동시에 학교가 외부기관에 연계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변호사, 의사, 상담·복지 실천가가 같은 사례를 서로 다른 전문언어로 해석하면서도 학생의 말, 최소정보, 공동판단, 학교생활 회복이라는 공통축을 확인했다. 이는 학교상담법이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공적 책임을 연결하는 법이라는 사회적 설명력을 높였다.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시민네트워크는 문제의식, 10대 원칙, 조문화 방향, 현장 실행기준이라는 네 층의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활동은 이 근거를 의원실·교육당국·교원단체·학부모·학생·의료계와 검증하고, 법률안과 시행기준으로 정밀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13. 후속 과제와 산출물

과제	주요 내용	예상 산출물
입법제안서 최종 통합	3차 발제의 실행기준을 목적·정의·학생권리·정보보호·사례회의·연계·사후회복·교원보호 조문에 반영	의원실 제출용 통합 입법제안서
현장 운영 흐름 설계	즉시 안전부터 복귀·재평가까지 단계별 담당자·기한·필수 기록·학생 참여를 정리	학교용 1쪽 흐름도와 운영 매뉴얼 초안
표준서식 개발	사실 관찰기록, 사례회의 결정서, 학생 설명·의견서, 학교 생활 지원계획, 기능 중심 의료 의뢰·회신, 복귀점검표 개발	법 시행령·지침 검토용 서식 묶음
법제 정밀검토	동의, 보호자 통지 예외, 민감정보, 정보시스템, 권리구제, 벌칙, 기존 법률과의 관계 검토	조문별 법제검토표와 대안 문구
현장성 검증	교장·교감, 담임, 상담교원, 보건교사, 학생·학부모, 특수교육, 학교폭력 담당자, 교육지원청의 시뮬레이션	학교 규모·인력 유형별 실행 가능성 점검표
공론화 확대	학생·학부모·교원·의료·법률·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후속 토론회 또는 공청회 추진	쟁점별 의견서와 수정안
정책자료 요구	사례회의 개최, 교원 시간·대체인력, 민원 전가, 외부연계 후 복귀지원, 상담정보 처리 실태 확인	교육청·교육부 질의 및 국정감사 정책자료
기록·소통	전체 자료를 보존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핵심문장과 사례 중심 요약본 제작	증빙자료 목록, 1쪽 요약, 카드뉴스·브리핑 자료

※ 발제 말미에는 2026년 8월 25일을 잠정 일정으로 하는 제4차 토론회 또는 공청회 추진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확정 일정은 시민네트워크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

14. 결과보고서 핵심 문장

학교상담법은 학생을 병원에 보내지 않는 법이 아니다. 실제 위기는 즉시 보호하고 필요한 치료는 더 빠르게 연결하되, 학생이 병명·검사명·사건명으로만 처리되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말하고 상담받고 책임을 배우며 수업과 관계로 돌아갈 절차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핵심 문장은 제3차 토론회에서 확인된 학교상담법의 정체성을 압축한다. 학교상담법은 의료를 대체하지 않고, 다른 지원법의 전달체계를 중복해서 만들지도 않는다. 기존 절차가 작동할 때 학생의 권리, 상담정보의 경계, 공동판단, 교원의 역할, 연계 이후의 학교 생활 회복을 보충하는 횡단적 권리·절차법이다.

학교가 다시 책임진다는 것은 담임이나 상담교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 뜻이 아니다. 학교장과 교육청이 시간·인력·민원·자문·정보보호의 조건을 만들고, 각 전문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도록 공동책임을 제도화한다는 뜻이다.

15. 증빙 및 검토 자료

15-1. 확인된 기록과 자료

제3차 토론회는 발제자 7인의 순차 발제와 진행자의 종합 정리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의결 절차는 없었다. 아래 자료는 이 보고서의 작성과 내용 확인에 직접 사용한 기록이다.

1.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제1차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6. 5. 22.
2.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제2차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최종편집본, 2026. 6. 23.
3.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제3차 공개토론회 전체 녹취록, 2026. 7. 23. (약 131분)
4. 황상민, 「학교는 아이를 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끝내지 않아야 한다」 발표자료.
5. 조승연, 「유달리와 같은 학생을 만난 담임이 혼자 버티지 않게 하는 법」 발제문·발표자료.
6. 박미서, 「상당의 신뢰를 지키면서 학교의 공동책임을 작동시키는 법」 발제문.
7. 김수정, 「학생과 학부모가 통보받는 대상에서 회복의 협력자이자 주체가 되는 절차」 발제문·발표자료.
8. 이수연, 학교상담법 제3차 토론회 발제문 및 조문별 법제 검토.
9. 김미정, 「긴급위기 학생은 즉시 보호하고, 치료 이후 학생의 삶은 학교와 함께 회복하는 기준」 발제문 및 정책근거 자료.
10. 김혜원, 「문제행동을 책임 있는 표현과 학교생활 참여로 바꾸는 교육적 상담」 발제문·발표자료.

15-2. 추가 확보 시 별첨 가능한 증빙

시민네트워크의 공식 활동 증빙 또는 대외 공개 기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실제로 확인·확보한 범위에서 별첨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참가 인원, 종료 시각 또는 기록물 보관 정보는 추정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 실제 접속·참가 인원와 확인 가능한 참석기록
- 행사의 실제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토론회 홍보물, 행사 안내문 및 진행 화면
- 녹화물 또는 원본 기록물의 보관 여부와 관리 정보
- 발제자별 발제문·PPT 원본 파일 목록
- 질의응답·종합정리 등 실제 진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6. 최종 정리

제3차 공개토론회는 학교상담법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설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법이 제정되면 사건 직후 누가 학생을 보호하고 학급을 지킬지, 담임이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지, 학생에게 무엇을 설명할지, 상담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의료기관과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 치료와 미등교 뒤 누가 학생의 복귀를 책임 질지를 물었다.

그 답은 한 사람의 더 뛰어난 판단이 아니었다. 학생의 말을 듣고, 긴급위험을 구분하고, 관찰과 해석과 실행의 역할을 나누고, 상담 원문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지원정보를 공유하고, 외부연계 뒤에도 상담·학습·관계의 연결을 유지하는 학교 공동의 절차였다.

따라서 다음 입법 단계의 과제는 철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가 모든 학교에서 실제로 작동할 조건을 법률과 시행령, 인력과 시간, 표준서식과 권리구제에 정밀하게 새기는 일이다. 학생의 마음을 읽는 상담이 문제행동을 덮는 일이 아니라 안전·책임·배움·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때, 학교상담법은 위기학생을 환자나 관리대상으로만 남기지 않고 다시 학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이 될 수 있다.